

중구 자전거문화센터 2층 소매점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51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8. 12. 4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

1. 제안이유

「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구 자전거문화센터 2층 공간을 제3자(민간)에게 위탁하기 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현황

- 운영자: 김기연
- 행정재산: 중구 자전거문화센터(남외동634-1번지) 2층
- 사용수익기간: 2018. 10. 22. ~ 2018. 10. 21.[3년]
- 재사용수익기간: 2018. 10. 22. ~ 2019. 1. 21.[3개월]

나. 위탁내용

계	부지	건물(2층)	용도	사용·대부료 (3개월)
347.44㎡	279㎡	68.44㎡	휴게음식점(카페베네)	18,565,950원 (4,641,480원)

3. 근거법규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0조제2항

4. 향후계획

- 중구청 건설과 업무협약 후 2019. 1. 21.까지 입찰을 통해 민간 위탁업자 선정

근 거 법 규

「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20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 공단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.
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“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14.12.29.>